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재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수료 변동 및 불합격 시 재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1항·제4항)
- 나. 재시험 시 시료 선택(기존시료 또는 신규시료) 및 횟수 제한(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
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 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수수료) ① ----- ----- ----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받 취, 서류검토 등): 369,872 원
<신 설>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신 설>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 7원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재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삭 제>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생략)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
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
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
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
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

----- 2025년 1월 1일 ----

-----.

<삭 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 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

1. 시료 추출 장소

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

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

2.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배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5.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